

육아정책 소식

자기주도적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재난 이해 높이고, 어린이 안전 지키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초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 참여 학교는 학교별로 훈련 기간(4~11월) 중 4주 이내에서 재난안전훈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훈련 지침서와 영상, 비대면 수업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소방서 방문 체험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영상(소방서가 하는 일, 완강기 체험 등)을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심각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훈련과 관계기관 방문은 관련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실 내 수업방식으로 대체한다. 다만, 각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하에 소규모 학급만 참여하는 현장훈련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년, 훈련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훈련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주변 안전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았다.”라고 응답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형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키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3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은 보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대상 건강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군으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방문 대상의 경우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 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속방문 대상의 경우는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평균 25회~29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육 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이나 소아발달 문제 등과 관련된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을 위해 비대면 사업 지침, 교육자료 발간 및 추가 기본방문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보다 많은 엄마와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고위험 임신부 가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국 보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①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②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0조의3)
- ④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

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분	'21 ~ '22년	'22 ~ '23년
단계별 목표	1단계 인식 개선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2단계 실질적 행동유발 체벌 없는 양육 문화 조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주요 홍보내용	①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중점 홍보 ② 단순히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훈육 이라고 생각한 말과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① 아동 안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로서 신고 당위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② 체벌 없는 바람직한 훈육방안 제시
핵심 키워드	징계권 폐지(체벌금지) / 학대 예방 / 아동 존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 / 훈육법

남성 육아휴직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5월 13일(목) 오후 2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인 품림무약㈜(서울시 중구 소재)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첫째 1개사에 불과하던 인증 중소기업이 2020년에는 2,839개사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을 개정해 중소기업 심사지표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 가점을 상향(5점 → 8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인증을 제한하는 등 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인증 설명회를 열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경영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